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10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97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비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며, 실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